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0907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594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090766 판결

전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A

2. B(C생)

3. D(E생)

4. F

5. G

변론종결 2023. 6. 20.

판결선고 2023. 8. 22.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B(C생), D(E생)은 각 9,962,223원 및 그 중 9,962,2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F, G는 각 4,981,111원 및 그 중 4,981,110원에 대하여 각 2022. 2. 22.부터 2022. 6. 15.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C생),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E생)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E생)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가. H과 피고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A는 피고 B(C생), D(E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선택적으로 아래 가, 나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 가. 1) H과 피고 D(E생)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11. 2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29,886,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2) 피고 D(E생)은 원고에게 29,886,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1) H과 피고 D(E생)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11. 2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D(E생)은 피고 B(C생)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13,333,333원, 피고 F, G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각 6,666,666원을 양도하고, K에게 위 채

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 1) 원고는 2020. 4. 8. H과, H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액 3,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① H이 폐업을 하여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취득하고(제5조 제1항 제5호),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H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 3) H은 하남시 I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21. 12. 8. 위 음식점을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2. 2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9,919,9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관하여 현재 원고가 갖는 구상금채권의 총액은 29,886,670원(= 대위변제금잔액 29,886,663원 + 확정지연손해금 7원)이다.

다.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H은 피고 A에게 2021. 11. 2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21.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임대차계약 당사자 변경

1) H이 2019. 5. 21. K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K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었다.

2) H은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 D(E생)에게 양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H, 피고 D(E생), K는, 임차인 지위를 피고 D(E생)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과 K는 2021. 11. 29.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지급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음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마. H의 사망 및 상속

H은 2021. 11. 8. 육종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2021. 12. 13. 사망하였다. 그의 상속인들로 피고 B(C생), D(E생), F, G(이하 '피고 B 등')가 있다. 상속분은, 피고 B(C생), D(E생) 각 2/6, 피고 F, G 각 1/6이다.

【인정근거】 피고 A, D(E생)다툼 없는 사실, 갑1, 2, 4(가지번호 포함), 을가2, 5,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C생), F, G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구상금 청구(주문 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H의 상속인으로서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C생), D(E생)은 각 9,962,223원(= 29,886,670원 × 2/6) 및 그 중 9,962,221원(= 29,886,663원 × 2/6)에 대하여, 피고 F, G는 각 4,981,111원(= 29,886,670원 × 1/6) 및 그 중 4,981,110원(= 29,886,663원 × 1/6)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22. 2. 22.부터 이 사건 2022. 5.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22. 6. 15.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청구취지 2, 3항)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 또는 사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피고 D(E생)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H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신용보증사고(이 사건 음식점 폐업)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사전 또는 사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사후구상금 채권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피고 A는 “H이 2021. 11. 중순경에 암진단보험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함으로써 수령하는 노란 우산 공제금 1,700만 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H에게 위 돈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H의 예금채권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H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 상태였거나 위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별지1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L에 있는 M건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N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2층 P호 32.2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동구 L 대 401.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01.5분의 21.846

별지2

목 록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땅 H이 소외 K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도 하남시 Q (일출 점포 현과일가게 좌측) 면
 적 45㎡ 부동산에 대한 2019. 5. 2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반환채권.

